

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0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0월 7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0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한만석 기획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한국지방세연구원¹⁾ 운영비 출연 : 13,341천원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.2/10,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

1)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개편,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었음.

- 2023년 출연금 산출내역
 -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111,180백만원) × 1.2/10,000 = 13,341천원
(※ 산출근거규정 :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)
-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개정(2020. 9. 8 공포 및 2021. 1. 1 시행)으로 출연금 출연비율 변경

구 분	2011~2020년	2021년	2022년부터
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×	1.5 / 10,000	1.3 / 10,000	1.2 / 10,000

- 연도별 출연금 현황

(단위 : 천원)

해당년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출 연 금	9,966	10,737	11,346	10,898	12,064	13,341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① 제안이유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한 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3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내용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1 만분의 1.2를 곱하여 산출함.
- 자치구의 보통세는 등록·면허세와 재산세, 지방소비세 3개 세목임.

산출내역 : 111,180백만원 × 1.2 / 10,000 = **13,341천원**

↳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

③ 종합의견

-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